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5. 4. 2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4. 11. 한선미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: 2025. 4. 11.
- 다. 상정일자: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5. 4. 2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에 따라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 활성화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(안 제2조제12호)
- 나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의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의2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관한 사항(부칙 안 제2조)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동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5. 4. 4. ~ 2025. 4. 10. 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반 생활폐기물에 비해 배출량이 적고 품목이 다양하여 처리 방법의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 이에 따라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제12호는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항을 인용함.
- 안 제12조의2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구청장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구민의 배출 방법과 정기 수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현행 조례 체계상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(폐의약품, 수은함유 폐기물 등)은 ‘일반 생활폐기물’과는 달리 구체적인 배출 기준과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수거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구민의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음.

- 또한, 폐의약품과 같은 특정 유해폐기물은 부적절한 배출로 인해 수질 및 토양 오염, 2차 감염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- 아울러, 기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가 현행 폐기물관리 조례와 병행 운영하고 있었으나, 행정력의 낭비 및 조례 관리와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처리방안이 규정되어있어 이를 반영한 자치법규의 개정 활동으로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.
- 다만, 폐의약품과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 수거 및 전용 수거함 설치·유지를 이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와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구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자원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한 행정 추진계획이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[관 계 법 령]

「폐기물관리법」
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"생활계 유해폐기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 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-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"생활계 유해폐기물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4. 30.>

1. 폐농약
2. 폐의약품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4.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[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(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(天然放射性核種)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]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
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